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국·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를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존 국·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가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적용되는 행위제한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4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곳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산림으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된 벌채(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른 복구계획이 수립된 임산물 운반로를 포함한다)

나. 공원관리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따른 방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죽목의 벌채

- 다.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내에서 재난·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 라.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경된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u>법 제12조 제4항</u>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u>법 제12조 제5항</u> 에서 ----- ----- -----.